

의안번호	2204111
의 퇴 인	김용태 의원
회 답 일	2024. 11. 8.
추 계 번호	24F39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추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29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감면조항 대상에 대한 민국순직군경유족회 추가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9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지방세 감면대상에 추가할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대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의 설립 근거를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¹⁾의 의결을 전제로 발의된 것임
- 그러나 가용 정보가 미비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의 합리적인 추계 곤란
 -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설립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몰군경²⁾ 외에 순직군경³⁾과 공상군경⁴⁾을 회원으로 하는 새로운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재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는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단체의 고유 업무의 범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할 부동산 및 면허의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를 추계할 수 없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12호

2)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군무원을 의미

3)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직한 사병을 의미

4)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전역·퇴직한 사람을 의미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